

고 시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8-81호

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(2006.4.13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-15호(2009.7.2) 및 종로구고시 제2009-67호(2009.10.23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-78호(2009.12.11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2-89호(2012.12.21.)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6-39호(2016.4.15.)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7-37호(2017.3.17.)로 사업변경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4호(2018.5.31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된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대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변경인가 고시합니다.

2018년 8월 31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: 재개발사업(도시환경정비사업)
2. 사업의 명칭 : 돈의문재정비촉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3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128개월
4. 사업시행인가일 : 2009년 12월 03일

5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
구역명	위 치	시행면적(㎡)	대지면적(㎡)	정비기반시설(㎡)
돈의문3구역	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	8,844.4	6,400.8	2,443.6

6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사업시행자 명 칭		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
대 표 자	성 명	이 창 희
	주 소	-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 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)
주된 사무소 소재지		-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 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)

7. 사업변경사유 및 내용

- 건축계획 변경

구 분	기 정	변 경	비고
대지면적(㎡)	6,400.80	6,400.80	변경없음
건축면적(㎡)	3,381.37	3,393.76	12.39㎡ 증가
건 폐 율(%)	52.83	53.02	0.19% 증가
전체연면적(㎡)	84,823.73	86,268.54	1,444.81㎡ 증가
지하연면적(㎡)	30,431.51	31,973.45	1,541.94㎡ 증가
지상연면적(㎡)	54,392.22	54,295.09	97.13㎡ 감소
용 적 륜(%)	849.77	848.25	1.52% 감소
층 수	지하7층/ 지상 26층	지하7층/ 지상 26층	변경없음
주 용 도	업무시설, 판매시설	업무시설, 판매시설	변경없음
최고높이(M)	109.8m	109.8m	변경없음
주차대수	320대	320대	변경없음

※ 변경사유 : 지하 2개층 연면적 증가(입면 및 높이, 용적률 상승 없음)

- 사업시행기간 변경

변 경 전	변 경 후
사업시행인가일 ~ 126개월	사업시행인가일 ~ 128개월

8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: 생략(변경없음)

9. 기타관계도서 : 생략 (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). 끝.